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이 2024. 12. 20.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“국유재산법 준용 규정의 폐지(현행 제7조 및 제8조 삭제)”

- 법률에서 대통령령 위임의 근거가 되는 조문(종전 제4조제2항)을 개정하고 「국유재산법」, 「물품관리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의 준용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7조(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등)</u> ① <u>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와의 무상 양도계약이나 무상 대부계약에 따른다.</u> ② <u>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58조에 준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</u> ③ <u>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의 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4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</u> ④ <u>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1항에 따라 무상 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그 대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</u>	<u><삭 제></u>

<u>수 있다.</u> <u>제8조(「국유재산법」의 준용) 국</u> <u>유재산의 무상 양도와 무상 대</u> <u>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</u> <u>사항 외에는 「국유재산법」의</u> <u>규정을 준용한다.</u>	<u><삭 제>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4728